

사회적경제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의 정 토 론 회

- 일 시 : 2015. 9. 11.(금) 14:30
- 장 소 : 충남연구원 대회의실
- 주 최 :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5. 9. 11.(금) 14:30 ~ 17:00
- 장 소 : 충남연구원 대회의실
- 주 최 : 충청남도의회
- 주 제 : 사회적경제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 사 회 : 박춘섭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책임연구원
- 좌 장 : 이윤기 /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이사장
- 주제발표 : 이인우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소장
☞ 사회적경제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 지정토론
 - 김종문 /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 김용필 /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의원
 - 김현철 / 충청남도 경제정책과장
 - 박찬무 / 충남세종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 김종수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 윤평호 / 대전일보 차장
- 청중토론
- 폐 회

< 자료집 순서 >

■ 발 제

- ☞ 사회적경제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3
이인우 소장(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회적경제연구센터)

■ 토 론

- ☞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에 따른 충남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21
김종문 의원(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 ☞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이후 충남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24
김용필 의원(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 ☞ 사회적경제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26
김현철 과장(충청남도 경제정책과)
- ☞ 사회적경제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28
박찬무 회장(충남세종사회적기업협의회)
-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32
김종수 센터장(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 ☞ 충남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 34
윤평호 차장(대전일보)

▶ 발 제

- **사회적경제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 이인우 소장(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회적경제연구센터)

... 사회적경제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2015년 9월 11일 오후 2시 30분 - 5시

2015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메인토론회 발제자료

이인우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부설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소장
- 성남주민실험 사회적 금융 전문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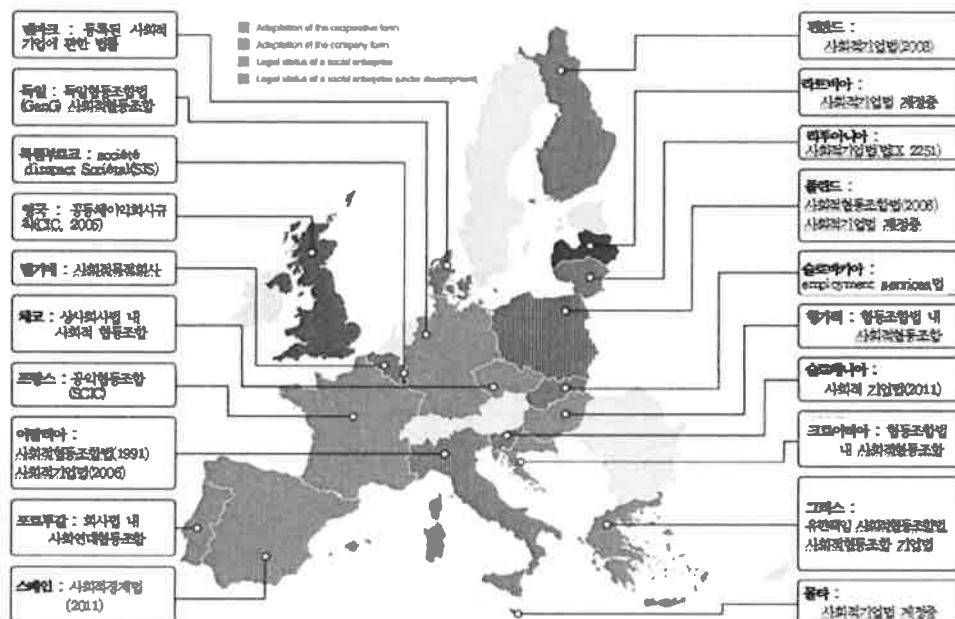
... 목 차 ...

- 1 지역단위 사회적경제 발전경로
- 2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전략 구상
- 3 추진전략의 고려 요소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발의 효과

필요성	- 기본법 제정에 대한 피로감에서 초기에는 반대의견도 형성되었으나 차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쟁점 형성	- 용어의 생소함과 용어에 대한 저항감으로 인해 쟁점이 형성되지 못함
문제 의식	- 사회적경제의 위상 정립과 인식 확대 필요성 형성 - 기본법과 무관하게 조성된 사회적경제 활동의 활성화 필요성은 여전히 제기

해외 사회적경제 관련 입법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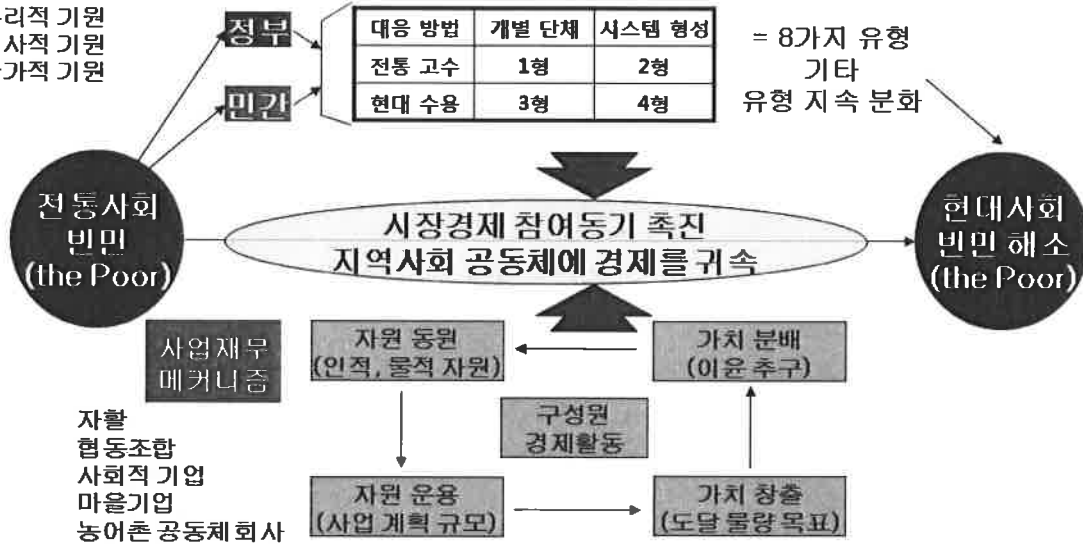


자료: Wilkinson(2014: 4)을 토대로 재작성.

사회적경제의 제도적 기원과 지역성 회복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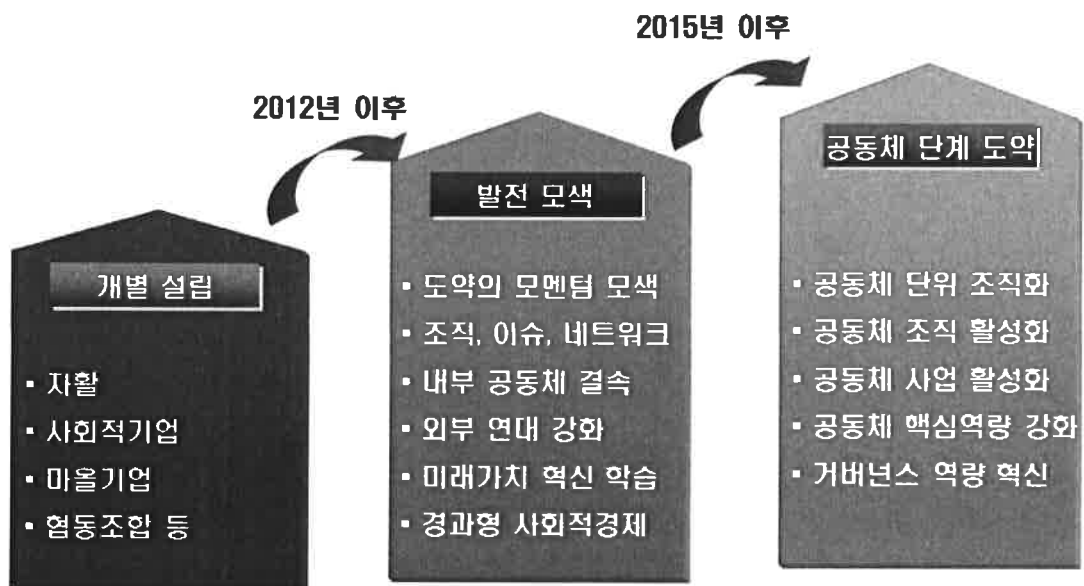
기원 재고 필요

- 논리적 기원
- 역사적 기원
- 국가적 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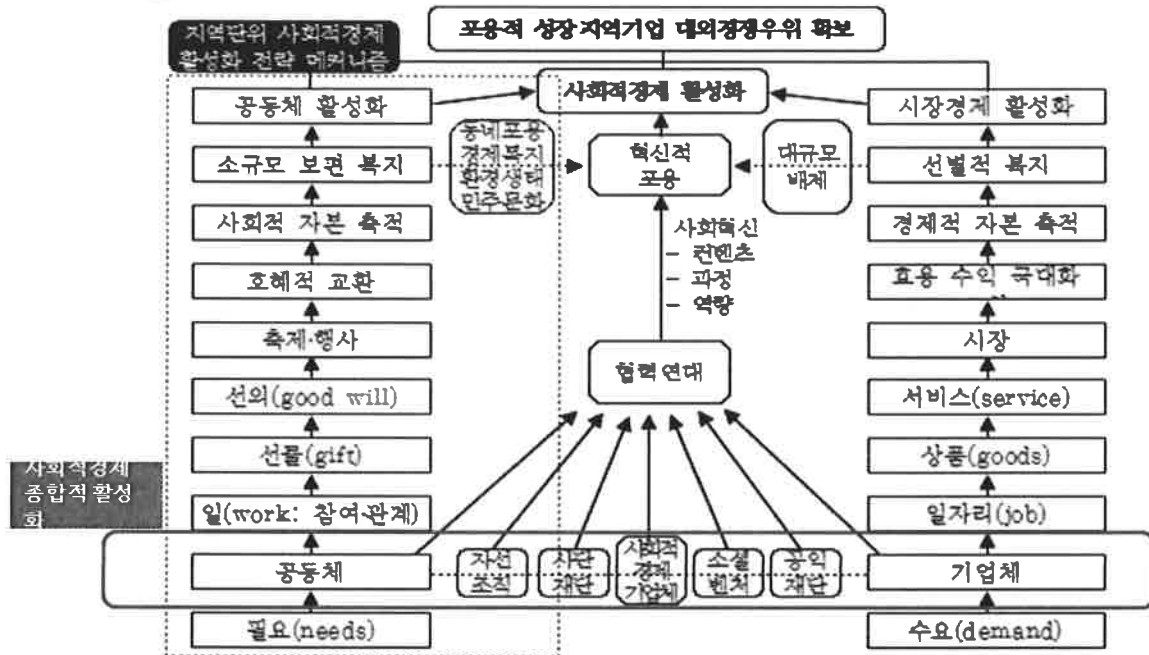
활동 주안점 : 시장경제 참여동기 촉진 Vs. 지역사회 공동체 경제 고차원적 복원

지역단위 사회적경제 발전경로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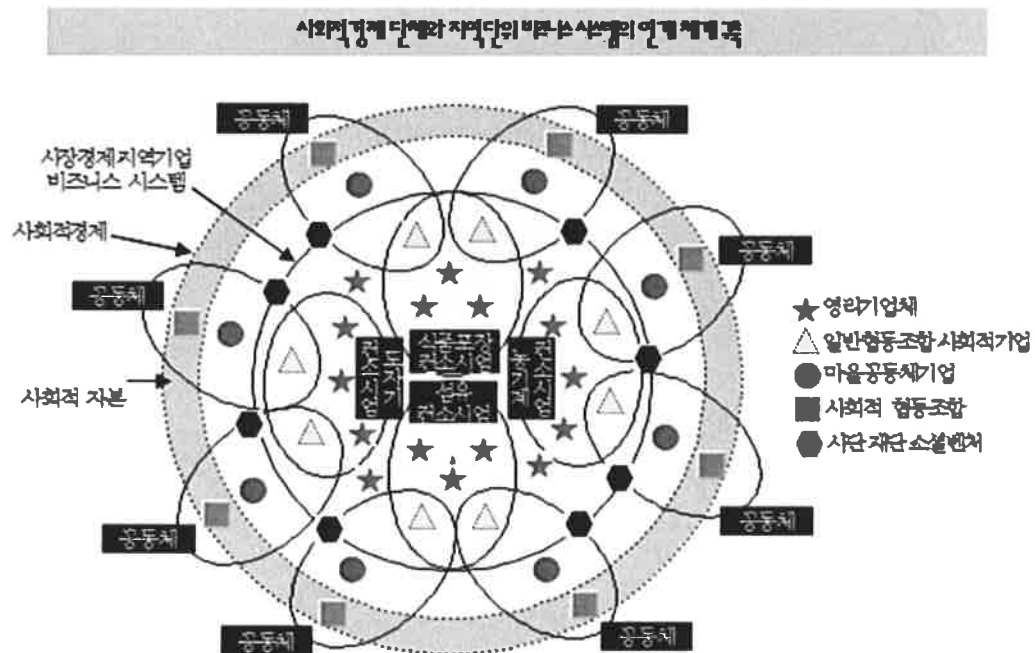


02 지역단위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 정립 필요성: 전략

- 주된 전략방향제정립: 공동체 운동과 사회적경제 운동의 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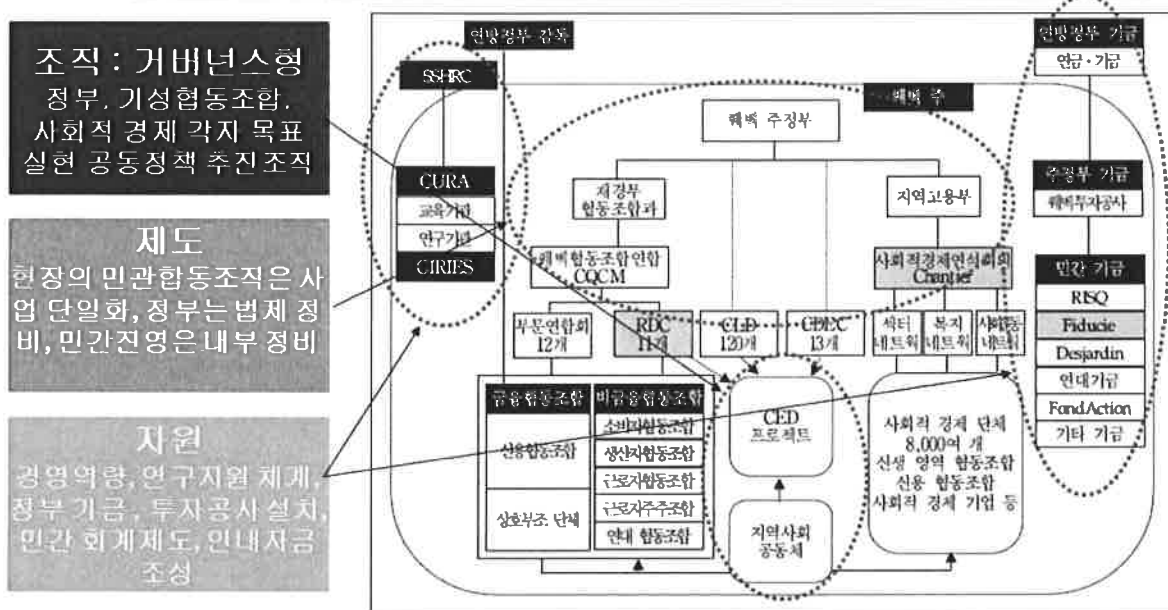


03 지역단위 사회적경제 경제적 발전상 개념화: 발전상



04-3 사회적경제 지역공동체 기초단위 조성 전략: 기초 단위

주요 사항: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각자 주제별 500자 이내의 사회정치적 주제 자유주제 1문 200자 이내의 정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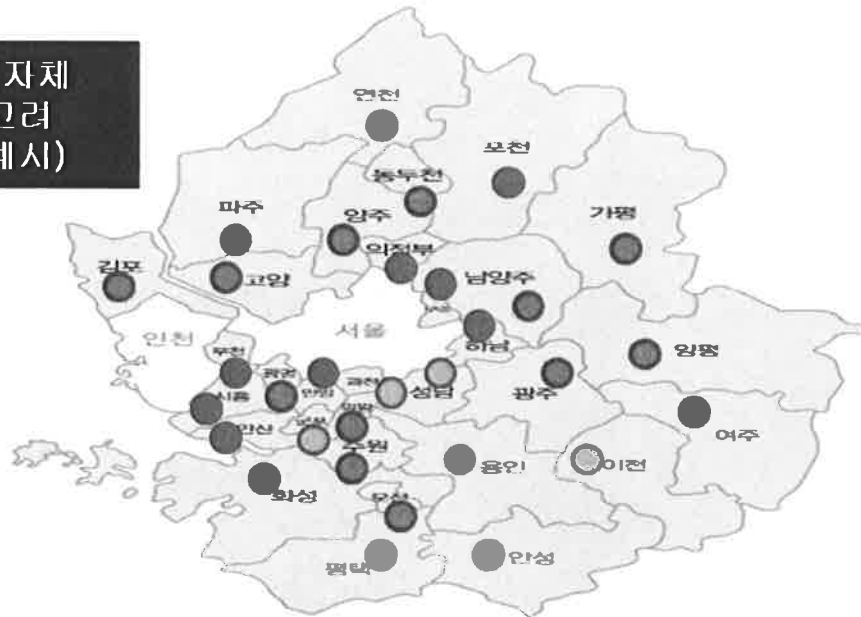
1 지역단위 사회적경제 발전경로

2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전략 구상

3 추진전략의 고려 요소

광역단위 사회적경제 조직 고려 요소

기초 지자체
특성 고려
(인구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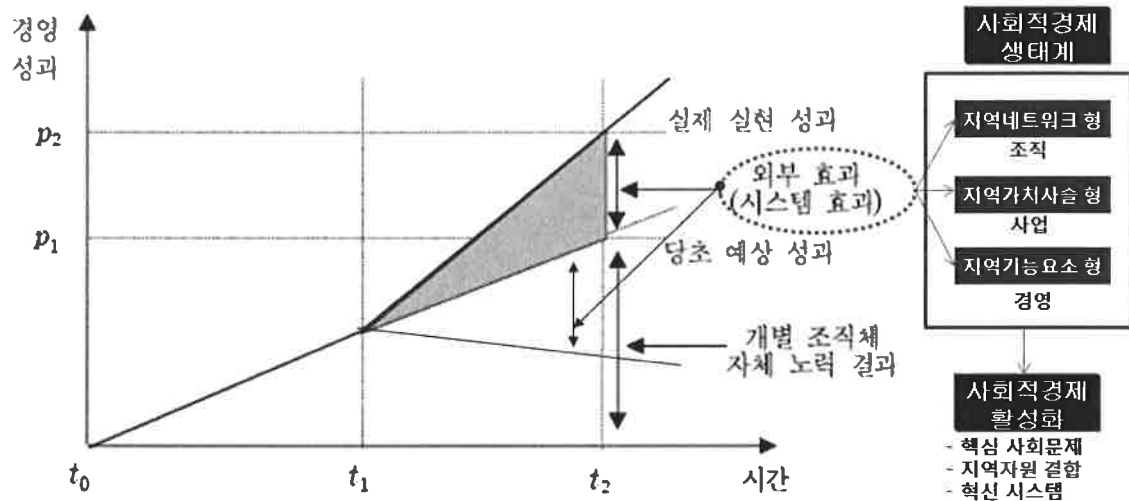


광역단위 사회적경제 조직 고려 요소

기초 지자체
특성 고려
(인구 예시)



광역단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고려 요소



광역단위 사회적 경제 생태계와 지역네트워크

지역 네트워크

수평적 협의회, 수직적 연합회, 동종 협의회, 이종 협의회
개별 조직체의 창업과 생존율에 긍정적 영향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경제 외연 확대 필요

지역가치사슬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체의 가치사슬 내 위치 파악
상호거래가 가능하도록 업종을 배열하는 활동이 중요
예)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지역기업과 컨소시엄 구축 등

지역기능요소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기능을 구축하기 위한 협동
교환시스템, 금융시스템(기금), 혁신시스템(혁신 리빙랩)

▶ 토 론

■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에 따른 충남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 김종문 의원(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이후 충남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 김용필 의원(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 사회적경제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 김현철 과장(충청남도 경제정책과)

■ 사회적경제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 박찬무 회장(충남세종사회적기업협의회)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 김종수 센터장(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충남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

- 윤평호 차장(대전일보)

(토론)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에 따른 충남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김 중 문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선진 외국사례에 비추어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사회적경제의 전통이 일천한 상황에서 다양한 활동의 원천이 한데 모아지지도 않아 장애인 고용, 도시빈민 자활, 재정지원 일자리, 취약계층 자립지원 등 여러 가지 정책과 관할청 부서의 난립으로 활성화의 원천 에너지도 충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시민사회와 당사자 조직을 통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와 자원을 가진 정부와 지자체의 반응은 미온적이거나 기회 추구적이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기업의 발전 방향이 참여와 공유, 협동과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경제적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가야한다는 점에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또한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민간 사회적경제조직들과 긴밀한 협력관계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면과제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협력관계 조성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전국적으로 사회적경제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안하고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의 사적이익보다 공동체 구성원을 위한 호혜경제이자 지역중심 풀뿌리 경제로서 사회적 공유가치의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경제가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 차원의 사회적경제 비전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감대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성장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일곱째,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교류와 연대를 강화한다. 사회적경제는 중앙집권적인 행정주도가 아닌 민/관 협력을 통해 추진해야 더욱 효과적이고 빠르게 성공할 수 있다. 지역에서 중앙까지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인 민/관이 참여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정책추진체계를 통합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별, 업종별, 부문별, 전국적으로 협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경제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희망이다.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생존의 절벽과 미래의 불안에 갇혀있는 사회취약계층의 시민들에게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따뜻한 삶을 열어주는 출발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부터 사회적경제 토대를 잘 구축해야 한다.

조직의 역할확대, 적극적인 시민참여모색 및 공공기관과의 수평적 협업 모색 등 다양한 부분에서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사회적경제영역의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해 충청남도의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은 시장경제에서 초기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안정적 자립을 통한 경영활동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자금조달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자금조달에 있어서 공공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민간영역의 자금조달을 위한 협력과 연대에 기반하여 사회적 기금을 통한 사회적금융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사회적 금융은 기금의 구축 뿐만 아니라 활용과 운용에 대한 종합적 시스템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의 확보를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경영 안정화의 노력은 필수적이다.

셋째로는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의 확산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혁신과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도내의 청·장년층의 적극적인 사회적경제 영역의 유입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들이 필요하다. 청년실업 또한 사회문제로 확장되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 의해 지역사회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적 아이디어들이 생겨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은 사회혁신에 의한 사회적경제 확장을 가속할 것이다.

넷째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이후 공공인식확산을 위해 관련된 주체들이 포함된 ‘사회적경제 정책포럼’과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 이는 공무원,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지역공동체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포함된 조직으로 도의 영역에서 사회적경제 정책의 개발과 확산 그리고 인식과 정보의 공유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플랫폼을 의미한다. 이러한 포럼조직은 공공의 인식확산과 지속적인 지역사회기반의 정책개발, 그리고 관련 공공조직의 실무자 및 시민들의 교육활동 같은 저변확산과 인식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경제는 이제 국가적 차원이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경제적 삶의 방식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와 경쟁시스템의 사회구조에서 벗어나 협력과 공생의 발전구조를 통해 진정한 국민과 도민의 행복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은 제도적 시금석이 될 것이며 이후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삶의 기반으로 사회적경제가 자리 잡도록 도의회를 비롯한 주요 주체들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첫째, 사회적경제 지원의 개념을 중앙이나 관의 주도 보다는 지역화와 공동체 중심으로 지원정책 기초의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탈리아나 퀘벡처럼 사회적경제는 지역단위에서 생태계형성이 중요하며 사회적경제의 방식이 지역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지역사회와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 정책적 성공의 여부가 판가름되기 때문이다.

둘째, 발제자가 제시한 구체적인 사회적경제 활동의 혁신동력 축적에 있어서 관의 역할은 혁신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으로 사회적금융체계와 거버넌스 구조의 형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사회적경제가 기초단위에서 민간중심의 자조적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하며 사회적경제의 재원 형성은 사회적기금의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 공공에서 사회적경제의 지원방식은 관련된 사회적 기금 구축의 기반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세금 감면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사회적기금의 구축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 지자체의 진흥기금을 일정 비율이상 적립하도록 하거나, 민간진영에서 CSR활동으로 기금을 모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들이다. 이러한 기금적립을 위한 공공의 적극적인 협조와 기금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관이 할 수 있는 본원적인 역할이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의 구조는 일방적인 민간에 대한 공공의 지원이 아니다. 민간이 자립적으로 지역수요충족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간접적인 지원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이며 자립적인 사회적경제조직들의 활동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역량을 강화해주는 지원 시스템의 구조이다. 또한 공공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민간의 자립화와 지역수요충족 및 문제해결능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관이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의 시스템은 지역자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과 맞물리면서 지역사회발전의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활동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근거를 마련해주는 상위의 기본법이다. 민간과 함께 공공의 관 또한 지역사회에 있어서 함께 중요한 주체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사회적경제는 민간 중심의 연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도모하는 자조적인 경제영역이다. 따라서 공공은 앞서 제시한 거버넌스의 협치 방식과 사회적기금 형성 지원을 중심으로 민간 사회적경제영역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마련할 것이다.

3.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의 의견

다음으로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이하 한기협)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입법에 대한 의견을 토론하겠다.

한기협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분산된 행정의 지원체계를 통합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장과 지원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점에서 환영의 입장이다. 또한 이미 사회적경제 주체 영역에서 사회적경제의 실체 및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인정, 행정통합,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등의 요구가 있어 왔음을 감안할 때, 동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입법 진행은 시의적절하다.

하지만 사회적경제는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인식과 개선 의지를 가지고서 지역사회에 기반 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시민사회)의 자발성, 주도성, 지역성이 기본원리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본법안상 정부 및 광역권 중심(주도)의 법안 체계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사회적경제가 올바르게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 스스로의 의지와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책적 생명인 만큼, 본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한기협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대한 의견을 전한다.

4. 기본법의 성격에 대하여

우선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육성, 지원체계 등을 포괄하고 있어 실행법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이다. 기본법은 말 그대로 사회적경제의 개별성을 아우르는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지원·육성, 사회적금융 등의 실행에 관한 내용들을 배제하고, 기본적인 내용으로 기본법을 통해 골격이 마련 되면 그것을 토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서 살을 붙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정의와 범주, 사회적경제 및 국가·지자체의 역할과 의무, 정책 방향·원칙, 행정 및 거버넌스 체계 등 내용을 간결하고 기본적으로 구성하여 개별 법들에 대한 근거법과 매개법으로 작용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들로 법이 구성된다면 ‘(가칭)사회적경제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가칭)사회적경제 금융에 관한 특별법’, ‘(가칭)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우선 구매에 관한 특별법’등의 개별적 특별법의 제정을 유도할 수 있는 기본법 내에 근거 조항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6.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공든탑이 무너진다고 표현한다. 인증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150여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활동을 하고 있다. 다른 대기업들의 조세포탈 등 적절치 않은 방식을 통한 부의 축적에 대한 비판보다 사회적기업들의 적절치 않은 행위에 대해 더 분노하는 것이 현실이다. 억울함이 없지는 않으나 사회적기업이라는 이름을 앞에 쓰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지만 윤리경영이라는 선언을 준비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의미가 있으며 더욱 공격적으로 사회적기업들의 사회성과를 정량화하고 알려나가야 한다.

취약계층의 고용과 사회서비스 확대,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투명한 회계와 기업운동을 전제로 재정지원을 받는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제정 여부를 떠나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사회적기업은 더욱 투명하고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할 운명인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서로의 자존감을 높여가야 한다.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서는 누구에겐가 주체로서 인정받기 어렵다. 스스로 돕지 않으면서 남에게 도와달란 말을 하기 어렵다. 사회적기업간 순환거래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7. 나가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정치권에서 얻어맞고 있지만 길게 보고 오히려 더 차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법제도가 당장 없어서 안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남이 해 주는 것을 바랄게 아니라 있는 법제도라도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도 집단지성은 유효한 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이 모든 일을 추진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가 플랫폼이 되어 정보와 인재, 자원을 필요한 곳에 연계해주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충청남도에서 새롭게 배제된 이들을 어떻게 지역에서 역할을 줄 것인가와(신용창출), 지역의 현안 문제는 무엇이고 이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협력을 끌어낼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기본법 이후 충청남도에서 당장 집중해야 할 일은 기금형성 등 지역의 자립과 자급을 돕는 일이다. 관(官)의 자원과 사업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의존하게 되면 민(民) 스스로의 자원을 내어놓고 모으거나 주체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연습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중간지원조직의 입장에서 민(民)이 이미 가지고 있는 많은 자원들을 스스로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도울 필요가 있다(그래서 기금 관련해서는 실제로 전문가들을 모아 연구회를 시작하고 내년엔 민간 스스로 활동을 먼저 시작하도록 도울 것임).

충청남도가 사회적경제 복합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미 구성된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군별, 업종별 구성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중첩적으로 네트워크화 하는 과정이 시도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는 당사자를 넘어 지역의 다양한 영역과의 이종교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는 지역에서 이미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로터리클럽 등 지역 단체들, 시민사회 영역, 노동조합 까지 확장될 필요가 있다(퀘백에서 기금이 초기에 탄실하게 시작된 것은 시민사회 영역과 노동조합이 힘을 보태어주었기 때문이라고 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의제들을 연속적으로 보도하기 보다 일회성, 단발성 보도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충남만 해도 시·군에 따라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수준이나 직면한 조건 등이 저마다 다르고 이로 인한 격차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를 진지하고 깊이 있게 다룬 보도는 그동안 적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애정과 고민에 바탕한 완성도 높은 기사가 많아져야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우리사회 일부 진영의 악의적인 편향과 왜곡도 조금은 고쳐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뿐만이 아니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의 주요 구성원들의 인식과 태도도 달라져야 합니다. 사회적경제의 구성원들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착한경제, 착한기업이라는 프레임에 안주하며 기업 문제를 지적하는 취재나 보도를 적대적으로 대하기도 합니다. 아쉬울 때는 사회적경제의 ‘사회’에 방점을 찍고 지지를 호소하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기업이라는 속성을 앞세워 언론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거나 회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는 담대한 목표 실현을 위해 언론도 가급적 지엽적인 문제는 모른척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애써 짝을 막 띄우고 있는 데 뛸방하지 말라는 것이죠. 저마다 일리는 있지만 그다지 합당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법 제정으로 사회적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원뿐만 아니라 책임과 의무도 가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의 단순한 흠집 내기, 꼬투리잡기 식의 보도는 분명 사라져야 하지만 엄정한 검증과 문제제기, 비판 보도에는 취재 단계부터 사회적경제 구성원들도 열린 자세와 사고로 임해야 합니다. 언론 보도가 당장은 아플지 모르지만 더 큰 문제를 막는 예방주사일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광역단위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정책과 집행에서 핵심 권한을 지닌 지방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원사업의 실효성과 중복성, 부풀려진 성과, 도덕적 해이, 지원기관의 권력화 등 사회적경제와 관련해 정밀한 검증이 필요한 문제는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검증과 비판에 취약한 사회적경제는 훗날 사회적‘괴물’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미래는 물론 아무도 바라지 않겠지요.

그리고 사회적경제 영역 또한 언론을 주민이나 소비자들과 손쉽게 소통하고 사회적경제의 관심을 확산하는 창구이자 채널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대기업들이 막대한 경비로 언론을 홍보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사회적경제 영역은 가치와 의미 중심으로 비용을 덜 들이고도 언론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알리고 확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주체들도 언론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신문의 경우 각 언론사의 지면운영 등을 알고 담당기자들과도 일상적인 유대를 가져야 합니다. 보도자료 한 장을 내더라도 본인들이 알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뉴스가 되고 채택이 될 만한 것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이 지난 1일부터 9월 한달간 운영하는 ‘사회적경제 홍보아카데미’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도들이 쌓여 언론과 사회적경제 모두 활성화의 토대가 튼튼히 구축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